제 안 설 명 서

【영주시립양로원설치및운영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립양로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12

제출년월일 : 1999. 7.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정이유

저소득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영주시립양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양로원은 영주시 조와동 산 69-5번지에 둠 (안 제2조)

나. 양로원은 입소노인의 보호관리 업무등을 수행함 (안 제3조)

다. 양로원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그외 65세 이상의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함 (안 제8조)

라. 양로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10일이내 입소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안 제9조)

마.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바. 시장은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안 제13조)

사. 시장은 수탁자에게 법령에 규정된 비용을 부담하며,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3. 세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가. 관련법령 (발췌) 1부.
나. 입법예고 결과 1부.

영주시립양로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영주시립양로원(이하 "양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양로원은 영주시 조와동 산69-5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양로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노인의 보호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원장) ① 양로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원장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제5조(직원) 양로원에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직원을 두며, 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제6조(복무) 원장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보수) 원장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기준에 의한다.

제8조(입소대상자) 양로원 입소대상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자로 한다.

3

1. 생활보호대상 노인중 65세이상의 자
2.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제9조(입소절차) ① 양로원 입소대상자가 양로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후 이를 신청인 및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자 준수사항) 양로원에 입소한 자는 양로원운영규정 및 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퇴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퇴소를 희망하는 자
2. 입소원인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전염병, 질병등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양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로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원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임면결과와 자체 운영규정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비용의 부담등) ① 시장은 양로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시장은 양로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양로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관 련 법 령 (발췌)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4. 〈생략〉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5. 〈생략〉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생략〉

②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등의 조치 및 제33조 제1항·제35조 제1항·제37조 제1항·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 ① 〈생략〉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 제1항·제35조 제1항·제37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입소조치) ① 〈생략〉

②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등)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활보호대상노인
   나.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5.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① 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⑧ 〈생략〉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2. 〈생략〉

3. 시설별 기준

시설의종류 / 구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	유료노인복지주택
1.~2.	〈생략〉			
3. 직원의 배치기준	가.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나. 총무 다.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생활보조원(입소자 20인당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마. 의사 또는 촉탁의사 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5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사. 사무원(입소자 100인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아. 영양사(입소자 50인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자. 취사부(입소자 50인당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차. 세탁부(입소자 50인당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생		략〉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 제2항 관련)

1.~2. 〈생략〉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생략〉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9.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① 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1999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Ⅰ. 〈생략〉

Ⅱ. 주요사업추진계획

1.~6. 〈생략〉

7.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1)~(4) 〈생략〉

(5) 지원내역

(가)종사자 인건비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99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에 의하여 지급

(나)~(다) 〈생략〉

(6) 〈생략〉

나.~다. 〈생략〉

8.~10. 〈생략〉

Ⅲ.~Ⅵ. 〈생략〉

입 법 예 고 결 과

☐ 조 례 명 : 영주시립양로원설치및운영조례(안)

☐ 예고방법

- 시, 읍.면.동 게시판 게시 ('99. 6. 16)
- 영주시보 제181호 ('99. 6. 18) 게재

☐ 예고내용 : 별첨과 같음

☐ 예고기간 : '99. 6. 16 ~ '99. 7. 5 (20일)

☐ 제출의견 : 없음

14